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산업의 맞춤형 규제지원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약품 분야 디지털 포렌식 수사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위해사범 수사인력 4명(6급 4명),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관리인력 7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1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편,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한시조직(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및 한시정원(4급이하 23명)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디지털헬스기기 규제 지원

제34조제2항 후단 중 “16명을”을 “17명을”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2022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4년 4월 30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643”을 “645”로 하고, 일반직 계 “642”를 “64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23”을 “625”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333”을 각각 “1,34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320”을 “1,334”로 한다.

별표 4 제1호1)을 삭제하고, 같은 호 2)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하며, 같은 표 별표 4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개 과	3명	2024년 9월 30일까지

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별표 4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36조의2제4항 관련) 다음에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존속기한: 2022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5 중 1. 제37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4월 30일) “2022년 4월 30일”을 “2024년 4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의료기기심사부) ①·② (생략)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u><신설></u>	제25조(의료기기심사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9. (현행과 같음) <u>10. 디지털헬스기기 규제 지원</u>
제36조의2(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u>2022년 2월 28일까지</u>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둔다. ② ~ ⑤ (생략)	제36조의2(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① ----- ----- ----- ----- <u>2023년 2월 28일</u> ----- ----- -----.
제37조(한시정원) ①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년 4월 30일까지</u>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	제37조(한시정원) ① ----- ----- ----- ----- <u>2024년 4월 30일</u> ----- ----- ----- ----- -----.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 해야 한다. ② · ③ (생 략)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643</u>		<u>645</u>	+2	
	.		.		.		
	.		.		.		
일반직	계		<u>642</u>		<u>644</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23</u>		<u>625</u>	+2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총 계	<u>1,333</u>	<u>1,347</u>	+14
일반직 계	<u>1,333</u>	<u>1,347</u>	+14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320</u>	<u>1,334</u>	+14

[별표 4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6조의2제4항 관련)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23
일반직 계	23
4급 이하	23

[별표 5]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7조 관련)

1. 제37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4월 30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2. 제37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4월 30일)

총계	1
일반직 계	1
6급 이하	1

3. 제37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1